

서울특별시종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은 2007년 3월 9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예산회계법」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항이 변경 및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.

II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해당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.

(1) 회계관계공무원 관련규정인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로 함 (안 제1조).

나. 회계관계공무원 중 제2조제3호 예산회계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, 분임자,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삭제 함 (별표 1의 비교 제1호).

III. 검토의견

1. 조례 정비 배경

○ 2005. 8. 4 「지방재정법」이 전문개정(법률 제7662호)되었고, 2002. 12. 30 「예산회계법」이 일부개정 (법률 제6636호)되면서 2006.

10. 4 예산회계법을 폐지하고 국가재정법(법률 제8050호)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일괄정비하려는 것입니다. 개정 내용을 보면, 종전 제2조제3호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예산회계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, 분임자,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를 삭제하는 것이며, 나머지 내용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표준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지 아니한 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.

IV. 관련법규

● 地方財政法

제95조 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①회계관계공무원(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● 豫算會計法

[폐지 2006.10.4 법률 제8050호]

「예산회계법」을 폐지한다

부칙(국가재정법) <제8050호, 2006.10.4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(폐지법률) 「예산회계법」 및 「기금관리기본법」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

● 보험업법

제4조 (보험업의 허가) ①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

가. 생명보험

나. 연금보험(퇴직보험 포함)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

2.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

가. 화재보험

나. 해상보험(항공·운송보험 포함)

다. 자동차보험

라. 보증보험

마. 재보험

바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

3.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

가. 상해보험

나. 질병보험

다. 간병보험

라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

②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③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·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에 한하며,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(이하 "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"이라 한다)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본다.

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5조 (허가신청서 등의 제출)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

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정관
2.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(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)
3.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, 보험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(이하 "기초서류"라 한다)
4.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